

하나카드 카드론 약관

시행일 : 2014.12.01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하나카드(주)(이하 "카드사"라 합니다)와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의해 카드론 약정을 체결한 회원의 카드론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대상 및 이용한도)

카드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카드론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 수수료, 기타 이자 등의 결제시기와 요율, 최저 대출금의 단위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수수료율,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의 변경)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이유로 말미암아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카드사는 회원에게 통지하고 수수료율,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4 조 (신청 및 실행방법)

- ① 카드론 지급신청은 전화상담원, ARS, 인터넷, 자동화기기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카드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ARS 또는 인터넷으로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원본인의 카드번호 또는 ID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을 신청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을 회원이 신청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며, 카드론 금액이 회원이 지정계좌(회원본인의 자동이체 결제계좌 포함. 이하 같습니다)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 ③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원본인의 카드비밀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을 신청하며, 카드론 금액이 자동화기기에서 지급되거나 또는 회원의 지정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 ④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 중 카드사가 선택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회원이 지정한 본인 결제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보고 카드론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 ⑤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ID번호, 비밀번호 또는 본인확인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누설 또는 누출, 방치하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 합니다.

제 5 조 (지연배상금)

- ① 분할상환원금, 이자를 그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하나카드 개인회원 약관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여신 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카드론 대금 전액을 즉시 결제하기로 하며, 결제일 이후에는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상환)

카드론에 대한 분할 상환원리금의 상환은 대출의 실행 일을 카드이용일로 한 카드이용대금결제의 방식으로 상환하며 상환기간 만료이전에 상환할 시에는 카드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상환하거나 결제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카드사에 전화로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준용)

- ①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나카드 개인회원 약관과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순차로 적용하고, 하나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적용할 경우에 카드론 대금은 카드이용대금으로 봅니다.
- ② 하나카드 카드론 약관, 하나카드 개인회원 약관과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동일한 사항을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하나카드 카드론 약관, 하나카드 개인회원 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순으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2014.11. 개정)